



보도	배포시	배포	2023. 7. 27. (목)
----	-----	----	------------------

담당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책임자	팀 장	서강훈	(02-3145-8521)
	금융사기대응2팀	담당자	선 임	윤형석	(02-3145-8534)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미끼로 자영업자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사례에 유의하세요!!!

▣ 소비자경보 2023 - 18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내용

- ◆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여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사례 발생
 - 사기범은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접근하여 소상공인 정책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 혹은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하다고,
 - 자영업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사기범 직원 또는 우편으로 전달토록 요청
- * 상품권 구매자금은 사기범이 해당 거래와 별도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영업자의 계좌로 이체한 피해금임

- ◆ 기존 정부지원 대출빙자 금융사기와 달리 대출금 상환, 수수료 등 명목의 금전 편취보다는 자영업자 계좌를 피해금 전달 수단으로 이용
- ⇒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본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본인이 모르는 경우라도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간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
- (거래제한)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등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 계좌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되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

1 구체적인 사기 수법

- 사기범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접근하여 대출에 필요하다는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
 - 신용한도가 없는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아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
 - 상품권 매입금액도 자기들이 지원해준다고 하여 이에 응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달책으로 전락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빙자한 사례

- ◆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는 대출이 필요하여 불법 대출광고 홈페이지의 간편 상담코너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이후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음
 - 사기범은 A에게 카드거래 실적이 많으면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며 체크카드 발급을 유도하고 단기간 고액 거래가 가능한 상품권 구매를 권유
 - A는 상품권 대금은 사기범이 입금할 것이며 대출한도가 늘어나면 수수료도 많아진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카드 결제 계좌번호*를 사기범에게 알려줌
 - * 사기범이 다른 쪽에서 작업 중이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로 입금을 유도
 - 사기범에게 기망당한 A는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기범이 지정한 인물에게 전달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면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

※ 신종 보이스피싱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수집한 사례로 신속히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대응하도록 금융업권에 전파

불법 대출광고 홈페이지



연 4.9% 최저금리
금융 채무 통합
자영업자, 사업자 대출

개인정보 수집화면

간편 상담신청

(본 사이트의 모든 이용신청과 관계는 전화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주위에 해당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표자(이름) 핸드폰번호

사업자 구분 개인 법인 카드사용여부 예 아니오

개인정보를 남용 하고 계신가요? (영리권, 광고 등) 예 아니오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선언, 채금제상 등 현재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현재가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예 아니오

금리 10% 이상의 금융권을 신채매주세요. (대환채무를 신채매주세요/ 중복신청가능)

은행&수당사 저축&저축 카드사 내부 기타

자금융역관리

자금융역관리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개인정보수집목적 이용 동의 정보보호

2 소비자 유의 사항

◆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 사기이용계좌는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급정지됩니다

○ 본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 동안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

* (피해자) 피해구제 신청 → (금융회사)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 (금감원) 사기이용계좌 채권 소멸 → (금융회사) 피해금 환급

○ 또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되면 지급정지 기간 동안 모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

□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 이외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소비자 행동 요령

◆ 대출상담으로 오인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 필요

□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 대출광고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대출조건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큼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 비교 가능

○ 또한, 대출상담 유도 전화 등을 통해 수집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행위에 노출되어 추가피해 발생 우려

□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하세요!**

1 계좌 지급정지

-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



2 내계좌 통합관리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
 -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가능
- * '23.7.5.부터는 신청채널을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



3 개인정보 노출 등록

-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https://pd.fss.or.kr>)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



4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ar.or.kr)'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
-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 확인시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본인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 차단 신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